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0-22

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

제 2 1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18가합516997 부당이득금

원 고 [redacted]

피 고 1. [redacted]시

2. [redacted]시

변 론 종 결 2018. 7. 16.

판 결 선 고 2018. 9. 13.

주 문

1. 피고 [redacted]시는 원고에게 148,538,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3. 2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피고 [redacted]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[redacted]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와 피고 [redacted]시가 각자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[redacted]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[redacted]시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0-22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 및 피고 [redacted]시는 원고에게 191,091,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2009년경 주식회사 [redacted]빌(이하 '[redacted]빌'이라 한다)이 피고 [redacted]시에 대하여 취득세(부동산)를, 피고 [redacted]시에 대하여 취득세(부동산), 재산세(주택, 토지), 지방소득세(법인소득)를 각각 체납하자, 그 무렵 피고들은 [redacted]빌 소유의 토지, 건물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마쳤다.

나. 2010. 2. 9. [redacted]빌에 대한 파산선고에 따라 같은 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(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합10).

다. 원고는 2014. 8.경 피고들에 대하여 파산선고 이전의 체납액을 납부하면서 '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중가산금은 재단채권이 아닌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한다'는 이유로 피고들이 [redacted]빌 소유의 토지, 건물에 마친 공매의 취소 및 체납처분의 집행취소를 요청하였으나, 피고들은 원고에게 '위 중가산금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'라는 이유를 들어 위 중가산금의 완납 시까지는 원고의 공매 취소 및 체납처분 집행취소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.

라.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다가 '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중가산금이 재단채권과 후순위파산채권의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쟁점으로 하여 당시 진행중인 대법원 2015다216444 사건에서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중가산금이 후순위파산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0-22

채권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원고가 납부한 중가산금의 반환을 청구하겠다'라는 권리유보통지하에 2016. 1. 12.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중가산금 납부 명목으로 피고 [redacted]시에 191,091,500원을, 피고 [redacted]시에 1,059,947,440원을 각각 납부하였고, 피고들은 2016. 1. 13. 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해제하였다.

마. 한편, 위 대법원 2015다216444 사건에서 2017. 11. 29. "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· 중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'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'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에서 제외된다"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.

바. 원고가 위 중가산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 [redacted]시에 대하여 191,091,500원의 반환을 구하고, 피고 [redacted]시에 대하여 1,059,947,440원의 반환을 구하자, ① 피고 [redacted]시는 2018. 4. 11. 원고에게 192,190,930원(피고 [redacted]시가 납부받은 위 중가산금 및 이자 상당액)을 지급하였고, ② 피고 [redacted]시는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한편 '피고 [redacted]시가 원고로부터 징수한 세금에는 국세(78,757,780원), 도세(합계액 832,651,220원)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실질적 귀속주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'라고 답변하였다.

사. 이에 원고는 위 국세, 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, 경상북도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(이 법원 2018가합534278), 피고 [redacted]시에 대한 청구금액을 148,538,440원(=1,059,947,440원 — 78,757,780원 — 832,651,220원)으로 감축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0호증, 을가 제1, 2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0-22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과 쟁점을 같이하는 위 대법원 2015다216444 사건의 판시와 같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중가산금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,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중가산금으로 납부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바, ① 피고 [redacted]시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위 변제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고, ② 피고 [redacted]시는 원고에게 위 148,538,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. 3. 2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피고 [redacted]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원고의 피고 [redacted]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[다만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[redacted]시 사이에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송의 경과(피고 [redacted]시가 이 사건 소 제기 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면서 임의변제한 사정, 원고의 피고 [redacted]시에 대한 소 취하에 대하여 피고 [redacted]시가 부동의한 사정) 등에 비추어 민사소송법 제99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[redacted]시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]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0-22

재판장 판사 이재석

판사 김지나

판사 김근홍